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조은기술

○ 대상 물품명 : CCTV 통합관제 VMS 솔루션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5,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조은기술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엑스게이트

○ 대상 물품명 : Axgate 13000s 2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엑스게이트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쿠도커뮤니케이션㈜

○ 대상 물품명 : IntelliVIX-G100, CDO-SMART-AI, AI 선별관제 H/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6,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쿠도커뮤니케이션㈜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와치텍

○ 대상 물품명 : WatchAll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와치텍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시큐어키

○ 대상 물품명 :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1,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시큐어키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마크애니

○ 대상 물품명 : 영상반출 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9,5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마크애니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아이티센클로잇(구 LG히다찌)

○ 대상 물품명 : 스토리지(G700)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4,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식회사 아이티센클로잇(구 LG히다찌)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아이앤아이맥스

○ 대상 물품명 : IP관리시스템(IPKeeper)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4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아이앤아이맥스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누리콘

○ 대상 물품명 : ViewFlex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9,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누리콘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아이티스테이션

○ 대상 물품명 : 패치관리솔루션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아이티스테이션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휴네시온

○ 대상 물품명 : 망연계 시스템 2식, 접근제어솔루션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4,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주)휴네시온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지오멕스소프트

○ 대상 물품명 : GIS S/W(서버, 클라이언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3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지오멕스소프트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새눈

○ 대상 물품명 : 문제차량 지능형 번호인식 S/W, 지능형 검색 S/W, 상황전파 S/W, 통합관제센터 업무 관리 프로그램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합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0,00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새 눈 (인)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 유지보수(H/W, S/W)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청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두전네트웍스(주)

○ 대상 물품명 : FW 1600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 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50,000원(부가세포함)** 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발주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청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두전네트웍스 주식회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 년 도시통합운영센터 장비(H/W, S/W) 유지보수
○ 발주기관("발주기관") : 천안시청
○ 제 품 명 : C9407R-96U-BNDL-A * 2EA, C9500-40X-A * 2EA, C9500-24X-A * 2EA
○ 제조사 또는 공급사("시스코"): Cisco Systems Korea Limited.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시스코"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직접 또는 "시스코"의 채널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를 통하여, 위 사업의 낙찰자(이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본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의 목적에 한해 사용된다.
② 낙찰자(발주기관에 대한)가 공급하는 제품이 "시스코"가 제조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코"는 직접 또는 파트너사를 통하여,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며,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물품공급·기술지원에 대한 사항은 "파트너사"(또는 시스코)와 낙찰자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 3 조 (협약금액)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파트너사"(또는 시스코)의 낙찰자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파트너사"(또는 시스코)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시스코"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12,400,000 원(부가세 포함) 이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낙찰자 및 파트너사와 협력한다.

제 4 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인서 발급) "시스코"는 본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시스코"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물품공급·기술지원확인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 년 10 월 13 일

"발주기관" 천안시청 (인)

"시스코" Cisco Systems Korea Limited.

(성명 및 서명)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무역센터 아셈타워 5층(06164)

[English Translation]

Agreement on Supply of Products or Provision of Support Services

Project Name: Maintenance of City Integrated Operations Center Equipment (H/W, S/W) for 2027
Ordering Entity ("A"): Cheonan City Hall
Product Name: C9407R-96U-BNDL-A * 2EA, C9500-40X-A * 2EA, C9500-24X-A * 2EA
Manufacturer or Supplier ("B"): Cisco Systems Korea Limited.

Article 1 (Purpose) "A" is the ordering entity, and "B" is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which retains the capacity to provide or manufacture special capability or quality of certain products. In connection with the above-referenced project,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facilitate in a way that "B", directly or through "B"'s channel partners (hereinafter "Partners"), will be able to smoothly supply the products and provide support services to the successful bidder (hereinafter "Successful Bidder") of the above project.

Article 2 (Scope of Use and Agreement) ① This Agreement will be only used for the purpose of the supply of products or provision of support services for the above project.
② In the event that the products to be supplied by the Successful Bidder (to the ordering entity) are the ones manufactured by "B", "B" will directly or through Partners supply the products or provide support services to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terms of such supply or provision to the Successful Bidder will be determined by an agreement between "B" (or Partners) and the Successful Bidder.

Article 3 (Price Agreement) Any price for the supply of the products or provision of support services by "B" (or Partners) to the Successful Bidder as per Article 2 above will be mutually negotiated and determined between "B" (or Partners) and the Successful Bidder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the subject special capability and quality of products, and "B" will work with the Successful Bidder and Partners to enable the Successful Bidder to offer "A" an amount which is no greater than 12,400,000Won (including VAT).

Article 4 (Issuance of Written Confirmation for Supply of Products or Provision of Support Services) "B" agrees to supply the products or provide support services to the Successful Bidder subject to the scope of this Agreement and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 fair trading practice, and when requested by "A", "B" shall issue to the Successful Bidder a written confirmation for the supply of products or provision of support services.

Date 13 October, 2026

"A" Cheonan City Hall (Chop)

"B" Cisco Systems Korea Limited.

(Name and Signature)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아셈타워 5층(06164)